조선충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1547호(號) 1932(昭和 7)년 3월 7일 월요일 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103호(號)

1930(昭和 5)년 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138호(號)(조선총독부철도[朝鮮總督府鐵 道], 사설철도[私設鐵道], 궤도[軌道] 및 항로[航路] 간[間] 여객 및 수·소하물 연대운송규 칙[旅客及手·小荷物連帶運送規則]) 중(中)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32(昭和 7)년 3월 7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우가키 가즈시게(宇垣一成)

제21조(條)의2 자동차선(自動車線) 발착(發著)의 탁송수하물(託送手荷物)에 대(對)한 1개 (箇)의 최대중량(最大重量)은 30kg(瓩)까지로 하고, 여객(旅客)은 당해(當該) 중량(重量) (소아[小兒]는 15kg[瓩])을 초과(超過)하여 탁송(託送)하는 것을 부득(不得)함.